

<의안번호 제2550호>

제66회 세종시의회 제2차 정례회  
제 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
2020. 12. 11.(금) 10:00

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 
기금운용계획안

# 검 토 보 고 서



세종특별자치시의회  
예산결산특별위원회

〈의안번호 제2550호〉

---

**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 
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**

---

# || 목 차 ||

① 기금 개요

② 기금 현황

③ 기금조성 현황

④ 기금운용 계획

④ 검토의견

# 1

## 기금 개요

- 설치근거: 「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
- 설치목적: 회계연도 간 재원을 조정하여 재정의 건전하고 안정적인 운용을 목적으로 함
- 기금사업 개요: '21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재원 보전을 위해 500억 원을 세입으로 보전할 계획

# 2

## 기금 현황

기금명	설치년도	설치목적	설치근거	소관부서	비고
교육재정안정화기금	2019	회계연도 간 재원을 조정하여 재정 건전성 및 안정성 확보	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	조직예산과	

# 3

## 기금조성 현황

- 기금 조성 총 규모

(단위:천원)

기금명	'20년도말 조성액(a)	'21년도 기금운용계획		'21년도말 조성액 (d=a+b-c)	융자금 미회수채권 (e)	총 조성규모 (f=d+e)
		조성계획(b)	집행계획(c)			
교육재정안정화기금	180,973,588	543,893	50,000,000	131,517,481	0	131,517,481

## 4

## 기금운용 계획

## ○ 자금수지 총괄표

(단위:천 원)

수입 계획				지출 계획			
수입항목	'21년 수입액	'20년 수입액	증감	지출항목	'21년 지출액	'20년 지출액	증감
합 계	181,517,481	180,973,588	543,893	합 계	181,517,481	180,973,588	543,893
교특회계 전입금	543,893	2,163,882	△1,619,989	교특회계 전출금	131,517,481	180,973,588	△49,456,107
예치 금수	180,973,588	173,809,706	7,163,882	예치 금	50,000,000	-	50,000,000
이자수입		5,000,000	△5,000,000				

## ○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

(단위:천 원)

연도별	조성액			집행액	잔액 (a-b)
	계(a)	전입금	이자수입	기타지출(b)	
2019	173,809,706	173,809,706	0	0	173,809,706
2020	7,163,882	5,000,000	2,163,882	0	7,163,882
2021	543,893	0	543,893	50,000,000	△49,456,107
계	174,260,164	178,809,706	2,707,775	50,000,000	131,517,481

## ○ 예치금

(단위:천 원)

예치은행	'19년도말 현재액(a)	'20년도말 현재액(b)	'21년도말 현재액(b)	증감 (b-a)	비고
합 계	173,809,706	180,973,588	131,517,481	△49,456,107	
NH농협은행	173,809,706	180,973,588	131,517,481	△49,456,107	

- 지방교육재정은 외부 이전수입 의존도가 높고, 대내외적 경제 상황에 따라 재정의 불안정성의 위험도가 높아 안정적 교육재정 운영을 위해
- '21년도는 「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」 제3조<sup>1)</sup>(기금의 사용)에 따라 500억 원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으로 보전할 계획으로(3년 평균 총세입재원 1조 789억원), 세입보전 전출금과 이자 수입을 산정하여 총 1,315억 17백만 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할 계획임
-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와 고교 무상교육 등 교육 복지 사업 확대로 교육재정 세입의 감소와 교육환경 개선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기금 운영에 있어 면밀한 검토를 통해 기금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
- 아울러, 지난 제66회 3차 본회의를 통해 2020년 기금운영 계획변경안이 당초 계획안에서 수입에 10억 59백만 원이 증액되는 것으로 확정되었으므로, 차후 기금 수입에 반영되어야 할 것임

1) 제3조(기금의 사용) 이 조례에 따라 조성된 적립금은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. 다만, 한 회계연도에 적립 총액의 70퍼센트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.

1. 교육비특별회계세입재원이 과거 3년 평균 금액보다 감소하여 세입의 보전이 필요한 경우
2. 대규모 재난·재해 대응 및 예방 등을 위해 기금사용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교육비특별회계에 편성된 예비비로 충당할 수 없을 경우
3.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 및 민자사업지급금(BTL)에 충당할 경우
4. 시설개선사업, 교육정책사업 등 대규모 사업 추진을 위해 기금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
5. 그 밖에 기금의 관리·운용에 필요한 경비